

경남도립남해대학 학칙

[시행 2018. 5. 4.] [제2018-8호, 2018. 5. 4. 일부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대학은 대한민국 교육의 근본이념에 입각하여 국가와 지역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교수·연구하고 재능을 연마하여 국가 및 지역사회발전에 필요한 지식 기반사회에 적합한 창조적 전문직업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대학은 경남도립남해대학이라 한다.

제3조(위치) 본 대학은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 78번길 30 일원에 둔다.

제4조(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본 대학에 두는 학과 및 입학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학사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정원은 입학정원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설치학과 및 모집정원은 [별표5]와 같이한다.

제 2 장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제5조(수업연한) ① 본 대학의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한다. 다만,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의 수업연한은 전문학사 학위과정 등을 포함하여 4년으로 한다.

② 졸업에 필요한 최저 학점 이상을 취득한 학생에 대한 수업연한의 단축은 수업연한의 4분의 1 이내로 한다.

제6조(재학연한) ① 재학연한은 수업연한의 1.5배로 한다.

② 재학연한 내에 본 대학의 전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사람은 학적을 상실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총장의 허가를 받아 재학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는 수업연한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제 3 장 학년, 학기, 수업일수 및 휴업일

제7조(학년·학기) ① 학년은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하고, 다음과 같이 두 학기로 나눈다. 다만, 제2학기의 수업은 학사운영상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주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기 시작일 전에 개강할 수 있다.

1. 제1학기 :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 제2학기 :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② 제1항에 관계없이 하계 및 동계방학 기간중에 계절학기를 둘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학기는 교육상 필요에 따라 전공, 학년 또는 학위과정별로 달리 정할 수 있

다. 세부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학교의 수업일수와 교과별 수업일수로 구분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매 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③ 총장은 천재지변, 그 밖에 교육과정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을 경우에는 매학년도 2주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교과별 수업일수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 이내로 정하되, 학칙 제30조에 따른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의 이수에 지장이 없도록 정하여야 한다.

제9조(휴업일) ① 정기 휴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계방학 : 6월부터 8월 사이
2. 동계방학 : 12월부터 2월 사이
3. 개교기념일 : 3월 7일
4. 관공서의 공휴일

② 휴업일은 필요한 경우 총장이 변경할 수 있다.

③ 총장은 비상재해, 그 밖의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④ 정기 휴업일이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수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 4 장 입학 및 등록

제10조(입학 시기) ① 입학을 허가하는 시기는 학기 개시일로부터 수업일수 4분의 1 이내로 한다.

② 모집 시기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수시모집,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으로 구분하여 매 학년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선발일정에 따른다.

제11조(입학자격) ① 전문학사 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② 학사학위 전공 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사람으로서 산업체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12조(입학지원) 입학을 지원하는 사람은 정해진 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는 매 학년도 수시모집 공고일 전에 총장이 결정한다.

1. 졸업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증명서
2. 최종학교의 성적증명서
3.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4. 출신학교장의 추천서(해당자에 한함)
5. 기타 총장이 정한 서류

제13조(입학전형) ① 입학전형은 매 학년도 교육부에서 시달하는 전문대학 입학전형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 중 총장이 정하는 선발방법에 따른다.

1.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2. 출신고교 학생생활기록부의 기록

3. 면접고사
4. 실기고사
5. 적성검사
6. 신체검사
7. 자기소개서

②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입학전형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제14조(입시공정관리 대책위원회) ①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입시 공정관리 대책 위원회를 둔다.

② 입시 공정관리 대책위원회는 총장 직속으로 설치하되,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5조(학사학위 전공 심화과정 운영위원회) ① 학사학위 전공 심화과정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과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학사학위 전공 심화과정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학사학위 전공 심화과정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총장이 되고 위원은 교수 및 관련 산업체 임직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며 산업체 임직원 구성비를 1/2이상으로 한다.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입학허가 및 취소) ① 입학(재입학, 편입학 포함)허가는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② 부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람에 대하여는 입학허가를 취소한다.

제17조(이중 학적 금지) 본 대학의 학생은 이중 학적을 가질 수 없다. 다만, 본 대학과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한 국내·외 대학에서 수학하는 경우 수학 기간(국외 대학의 경우 체류기간) 동안은 예외로 한다.

제18조(편입학) ① 전문대학 및 대학 1, 2학년의 전 과정을 이수한 사람과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사람은 편입학 할 수 있다.

② 편입학은 각 학과별로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결원이 있을 때 종전의 전공과 동일한 계열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③ 타 대학에서 징계로 제적된 학생에 한해서는 편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제19조(전과) ① 교내 전과는 1학년 2학기 개강 전 한 번만 허가할 수 있다. 단, 휴학기간중 폐지된 학과의 학생에 대한 전과는 예외로 한다.

② 전과는 학과별 입학정원의 50퍼센트 범위에서 허가한다. <개정 2017.4.4.>

③ 전과한 학생은 정해진 과목의 전부를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취득한 학점은 총장이 인정할 수 있다.

제20조(재입학) ① 자퇴한 사람 또는 제적된 사람에 대하여는 2년 이내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병역의무로 인한 군 복무기간은 위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입학은 입학정원의 범위에서 결원이 있을 경우 동일 학과에만 허가할 수

있다.

③ 재입학은 한차례에 한하여 허용한다.

④ 징계로 인하여 제적된 학생에 대해서는 허가하지 아니한다.

제21조(등록) ① 입학이 허가된 사람은 지정된 기일 내에 납입금을 납부하고 수학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기일 내에 등록을 하지 않을 때는 입학허가를 취소하고, 재학생은 제적한다.

제 5 장 학적관리

제22조(휴학) ① 질병, 군 입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는 학부형 연서로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② “삭제” <2015.8.11.>

③ 휴학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재학 중 두 번까지만 허가한다. 단, 질병, 장애, 출산, 통산 3년 이내의 외국 어학연수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람은 휴학기간과 휴학횟수를 연장할 수 있다.

④ 군 입대로 인한 휴학기간은 제3항의 휴학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5.8.11.>

⑤ 휴학기간에도 학적은 보유된다. <개정 2015.8.11.>

⑥ 휴학과 관련한 기타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5.8.11.>

제23조(복학) ① 휴학한 사람은 휴학기간이 만료되거나 휴학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없이 복학하여야 하며, 휴학기간이라도 총장의 승인을 받아 복학할 수 있다.

② 복학은 학기 개시후 수업일수 4분 1 이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제24조(퇴학 및 제적) ① 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퇴학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지도교수, 학과장의 상담을 받은 후 학부형 연서로 [별지 제3호 서식]의 자퇴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② 본 대학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총장이 이를 제적한다.

1. 휴학기간 만료 후 정당한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사람

2. 질병 등으로 학업성취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사람

3. 다른 대학에 입학한 사람. 다만, 학칙 제17조의 규정대로 본 대학과 상호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한 국내·외 대학에 입학한 사람은 예외로 한다.

4. 정당한 이유 없이 매 학기 정해진 기간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사람

5. 재학연한을 초과한 사람

6. 징계로 인해 퇴학처분을 받은 사람

7. 자퇴한 사람

제 6 장 교과 및 수업

제25조(교육과정) ① 본 대학 교육과정은 교양교과와 전공교과로 구분한다.

② 각 학과별 교육과정(현장실습 포함)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학생의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습학기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그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6조(특별·심화과정 운영) ① 본 대학에는 2년 이내의 특별·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특별·심화과정은 본 대학에 설치된 학과와 유사한 분야에 한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특별·심화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관계법령에 따라 정한다.

제27조(산업체 위탁교육) ①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해 산업체에 재직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계약에는 위탁교육생의 선발기준, 위탁교육의 경비의 부담 및 납부방법,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산업체의 시설 및 교수자격이 있는 사람의 활용, 학교에 대한 산업체의 지원 등 위탁교육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산업체 위탁교육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위탁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④ 산업체 위탁교육생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학칙 및 교육부 지침을 준용한다.

제28조(시간제 등록생의 선발) ① 「고등교육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본 대학에 개설된 학과에 한정하여 시간제 등록생 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간제 등록생의 선발방법 및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9조(교육과정 연계운영) ①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실업계고교, 대학 및 산업체와의 연계협약에 의하여 교육과정을 상호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과정 연계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0조(교과이수 단위) ① 교과이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한 학기 내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개정 2015.8.11.>

② 졸업에 필요한 최저 이수학점은 80학점 이상으로 하며,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은 60학점 이상으로 한다.

③ 학생은 매학기 최저 15학점에서 최고 24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15학점 미만을 이수할 수 있다.

④ 현장실습 학점은 4학점 이상(4주 이상)으로 하되, 현장실습의 방법, 기간 및 학점기준 등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1조(계절학기) ① 하계휴가 및 동계휴가 중 계절학기를 개설할 수 있다. 계절학기의 개설과목 및 기간, 수강등록, 절차 등은 교무부에서 따로 정하여 개강 10일 전까지 공고한다.

② 계절학기 수강은 재학생 중에 해당과목 학점 미취득자와 재수강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다. 휴학 중인 사람이라도 다음 학기 복학을 전제로 하여 수강·이수할 수 있다. 다만, 학점취득 후 다음 학기에 복학하지 아니하면 취득한 학점은 무효가 된다.

③ 계절학기에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6학점 이내로 한다. 단, 현장실습은 예외로 한다.

- 제32조(수업)** ① 매 학기의 개설 교과목은 그 학기 시작 전에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수업은 9시부터 22시까지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야간강좌 개설학과와 수업시간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7 장 성적평가 및 졸업

- 제33조(평가지험)** ① 성적평가를 위하여 매 학기 중간시험과 학기말시험을 실시하며, 실시 시기는 학기 시작 전 학사일정에 포함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수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험별 성적반영 비율과 그 실시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각 교과목 총 수업시간의 4분의 1 이상을 결석한 사람은 해당 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④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때에는 총장의 허가를 얻어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⑤ 학과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졸업에 필요한 시험을 따로 실시할 수 있다.

- 제34조(성적)** ①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고, 출석상황, 평소 학습 성적, 과제 및 시험 성적 등을 종합 평가한다. 다만, 실험, 실습, 실기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특정교과목의 성적평가는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학업성적은 [별표 2]와 같이 9단계로 분류하며, 각 교과목의 강좌별 등급은 D⁺ 이상으로 하되, 성적평가를 점수로 표시할 필요가 없는 의무 이수 교과목의 실험, 실습 등에 있어서는 P(급제) 혹은 F(낙제)로 표시한다.
 ③ 추가시험 성적은 B⁺등급까지 인정할 수 있다.

- 제35조(학점인정)** ① 교육과정 변경 등으로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지정하는 유사 또는 대체 과목으로 학점을 취득하게 할 수 있다.
 ②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3조에 따라 국내외의 다른 학교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
 2. 「병역법」 제73조 제2항에 따라 입영 또는 복무로 인하여 휴학 중인 사람이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 <개정 2014.12.23.>
 ③ 학점인정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6조(성적의 취소) 이미 인정된 성적이 과오 또는 부정행위에 따른 것일 때는 그 성적을 취소한다.

제37조(학사경고) 성적평가 결과 성적이 불량하여 탈락이 예상되는 학생에 대하여는 학사경고를 한다.

제38조(졸업 및 수료) ① 정해진 전 과정을 이수하고 제30조 제2항에 따른 졸업학점이 충족되

있으며 2년간 성적 평균이 평점 1.5 이상인 사람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별표 3]에 해당하는 전문학사 학위증을 수여하며,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별표4]에 해당하는 학사 학위증을 수여한다.

② 정해진 학점을 이수하고도 졸업사정에서 탈락된 사람에게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별표 3]에 해당하는 전문학사과정수료증서 혹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별표 4]에 해당하는 학사과정수료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③ 수료에 필요한 이수학점은 전문학사과정 80학점 이상, 학사과정 60학점이상으로 한다.

④ 정상 졸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정해진 학점을 취득한 후 후기 졸업을 할 수 있다.

제 8 장 학생활동

제39조(학생회 조직) ① 건전한 학생활동을 통하여 학생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며 지도력과 자치활동을 배양하기 위하여 본 대학에 학생회를 두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학생회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는 그 활동이 정지된다.

제40조(학생단체의 조직) 학생회에 소속되지 아니한 학생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 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1조(학생활동의 제한) ① 학생은 학칙 등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교육 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② 학생은 수업, 연구, 업무수행 등 학교의 기본 기능 수행을 방해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를 할 수 없다.

제42조(학생지도) 학생회를 지도·육성하기 위하여 학생지도위원회를 둔다.

제43조(학생활동의 사전 승인)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교내에서의 10명 이상의 집회
2. 교내외 광고, 인쇄물의 부착 또는 배부
3.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학생활동 후원 요청 또는 시상 의뢰
4. 외부인사의 학내 초청

제44조(간행물 발간) 학생단체 또는 학생의 모든 정기·부정기 간행물의 발간 및 배포는 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9 장 규율 및 상벌

제45조(학생의 의무)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성심성의로 학업에 종사하여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혀 교양을 높임으로써 장차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자질을 닦아야 한다.

- 제46조(포상)** ① 총장은 성품이 착하고 행동이 올바르며 학업성적이 우수한 사람 또는 선행이 타의 모범이 될 만한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의 절차 및 종류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47조(징계)** ① 총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1. 학칙을 위반한 학생
 2. 학업성적이 열등하고 성품과 행동이 불량하며 개선의 가망이 없는 학생
 3. 그 밖에 학생의 본분을 일탈한 행위를 한 학생
- ② 징계는 그 정상에 따라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및 퇴학으로 구분한다.

제 10 장 납입금

- 제48조(납입금)** ① 납입금의 결정은 「경상남도 도립대학 운영조례」 제26조에 따른다.
 ② 학생은 매 학기 등록기간 내에 정해진 수업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5.8.11.>
 ④ 학생의 편의를 위하여 학점 당 등록금제 및 분납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⑤ 학점당 등록금제 및 분납제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⑥ 납부한 수업료 등의 반환은 교육부의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 제49조(납입금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 납입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
 2. 천재지변 및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람으로서 도지사 승인을 받은 사람
 3. 다자녀(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
- ② 제1항 제3호의 경우 다음 각 호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하여 이전 3개월 이상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다. 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학부형의 직장 등으로부터 학비 명목으로 지원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5.8.11.>
1. 신입생의 경우 입학원서 접수 마감일
 2. 재학생의 경우 매학기 등록 마감일

- 제50조(수수료 및 사용료)** ① 총장은 학사행정과 관련한 각종 증명을 발급하거나 학교운영과 관련한 시설물의 임대 등을 할 때는 수수료,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수수료와 사용료의 징수는 「경상남도 도립대학 운영조례」 제28조와 제29조에 따른다.

제 11 장 장학금

- 제51조(장학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학생

2. 대학 발전에 공이 있거나 명예를 선양한 학생
3. 그 밖에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 지급이 결정된 학생
- ② 장학금의 지급범위, 지급방법, 지급금액, 대상자 선정 및 지급중지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2조(장학위원회) ① 총장은 「경상남도 도립대학 운영조례」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에 따른 기금의 조성·운용과 장학의 기본방침 결정,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② 장학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12 장 대학평의위원회 및 각종 위원회

제53조(대학평의위원회) ① 본교의 자율적 발전과 원활한 운영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위원회를 둔다.

② 대학평의위원회는 전임교원 대표 5명 이상 7명 이하, 직원 대표 2명, 조교 대표 1명, 학생 대표 2명으로 구성한다.

③ 대학평의위원회의 의장은 교수회 의장으로 한다.

④ 대학평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의 장기발전계획
2. 학과나 전공의 폐지분합
3. 학생 정원 조정에 관한 사항
4. 학생 및 교직원 복지에 관한 사항
5. 재적 대학평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사항
6. 총장이 요청하는 사항

⑤ 대학평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⑥ 위 제4항제2호 내지 제3호 등 대학 구조개혁과 관련된 사안의 경우 교원의 소속변경 및 해당 학과의 휴학생 관리와 관련된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6.8.30>

제54조(교수회) ① 교수회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구성한다.

② 교수회는 총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총장 부재 시에는 그 직무대리자가 업무를 대행한다.

③ 교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칙변경에 관한 사항
2. 입학(재입학, 편입학 포함)·진급·졸업에 관한 사항
3. 시험 및 성적사정에 관한 사항
4. 학생지도 및 상벌에 관한 사항
5. 학과간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총장이 부의한 사항

제55조(교무위원회) ① 대학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8.11.>

제55조의 2(징계위원회) ① 교원의 징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5.8.11.>

제56조(인사위원회) ① 교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7조(그 밖의 위원회) 학사운영 등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총장은 필요한 경우 사안별로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58조(교수협의회) ① 본 대학의 민주적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교수협의회를 둔다.

② 교수협의회는 교수를 대표하는 회장을 두고, 회장은 대학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총장에게 제언할 수 있다.

제 13 장 직제 및 기구

제59조(교직원) ① 본 대학에는 대학의 장으로서 총장을 둔다.

② 본 대학의 교원은 총장 외에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구분한다.

③ 총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학협력중점교수, 겸임교원, 초빙교원, 시간강사, 명예교수 등을 지정, 임용 또는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는 따로 정한다.

1. 산학협력중점교수 : 전임교원 중 총장이 지정하는 자 또는 전임교원 및 비전임교원으로 임용하는 자

2. 겸임교원 : 교원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관련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

3. 초빙교원 : 교원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다만, 특수한 교과를 교수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임용할 수 있다.

4. 시간강사 :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자

5. 명예교수 : 본 대학에서 총장, 전임교원으로 15년 이상 재직한 자

④ 본 대학에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직원과 조교를 두며 직원은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대학회계직원, 무기 및 기간제 근로자로 구분한다. <개정 2015.8.11.>

제60조(교직원의 임무) ① 총장은 대학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②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필요한 경우 산학협력중점교수를 두어 대내외적인 산학협력활동(교육, 연구, 봉사 등)을 전담하게 할 수 있다.

③ 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의 업무를 담당한다.

④ 조교는 교육·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

제61조(행정기구) 대학의 행정기구에 관하여는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62조(부속기관 및 부설연구소 등) ① 다음 각 호와 같이 부속기관, 부설연구소 및 특수법인인 산학협력단을 둔다.

1. 부속기관

가. 종합인력개발센터 : 그 산하에 장애학생지원센터를 둔다. <개정 2018.5.4.>

나. 정보지원센터 : 그 산하에 도서관을 둔다.

다. 기획홍보실 : 그 산하에 미디어센터를 둔다.

라. 평생교육원

마. 국제어학원

바. 기숙사 <신설 2018.5.4.>

2. 부설연구소

가. 교수학습지원센터

3. 산학협력단 (특수법인)

② 부속기관, 부설연구소 및 산학협력단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그 밖에 대학운영상 필요에 의한 한시적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14 장 학교규칙의 제·개정 등

제63조(학교규칙의 정의 및 세부사항 위임) ① 「고등교육법」 제6조에 규정된 대로 소정의 절차에 따라 본 대학에서 제정·시행되는 규범을 통틀어 ‘학교규칙’이라 부른다.

② 학교규칙의 확정·공포에 관한 권한은 총장에게 있다.

③ 학교규칙은 이 학칙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여 대강을 정하고, 세부사항은 하위의 학교규칙(효력단계의 순으로 규정, 시행세칙, 내규 등)으로 따로 정한다.

④ 국가법령이 학칙에 정하도록 한 사항 중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학칙)제1항제1호 내지 제16호에 명시된 사항을 제외한 사항은 위 제3항의 학교규칙 중 규정 혹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6.12.06.>

제64조(제·개정 절차) ① 본 대학의 최상위 규범인 이 학칙의 개정안은 총장이 발의한다.

② 각 부서의 장 또는 교수회 재적교원의 3분의 2 이상은 학교운영상 학칙 개정이 필요한 경우 개정안을 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학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개정안의 취지, 주요내용, 전문을 공개하여야 하며 학칙 개정안의 공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5일 이상으로 한다.

④ 각 부서의 장은 공고된 학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학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제출된 경우 의견을 제출한 부서에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공고 절차를 거친 개정안은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공포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학칙 개정안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⑦ 제63조제3항에 규정된 학교규칙 중 규정, 시행세칙, 내규 등의 제·개정 및 시행에 관해서는 이 학칙의 시행세칙에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6.12.06.>

제65조(시행세칙) 이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세칙의 제·개정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 별지/별표

[별표 1] 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별표 2] 9단계 평점방법

[별표 3] 전문학사학위의 종별

[별표 4]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학사학위의 종별

[별표 5]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설치학과 및 모집정원

[별지 제1호 서식] 학위증

[별지 제2호 서식] 수료증서

[별지 제3호 서식] 자퇴원

[별지 제4호 서식] 학위증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별지 제5호 서식] 수료증서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 부칙 <1996. 9. 1.>

① (시행일) 이 학칙(제11조, 제13조 제3항, 제14조 제1항, 제19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5항 신설, 제20조 제1항 단서삭제, 제2항, 제22조 제3항, 제58조 제1항)은 199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96. 8. 5. 변경인가, 교육부 전학 81412-351)

② (경과조치) 1996학년도 신입생 선발 및 입학 등 학사업무와 관련하여 이 학칙 시행 전에 이미 행한 사항은 본 학칙에 의해 행한 것으로 본다.

□ 부칙 <1996. 11. 1.>

이 학칙(제4조, 제13조 3, 제14조 제1항)은 199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96. 10. 21 정원 조정, 교육부 전행 81413-892)

□ 부칙 <1997. 3. 1.>

이 학칙(제34조)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1998. 2. 20.>

이 학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1998. 3. 20.>

① (시행일) 이 학칙 1998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 (규정의 폐지) 이 학칙(제38조)은 폐지한다.

부칙 <1999. 2. 24.>

① (시행일) 이 학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학과 명칭변경으로 인한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관리과, 세무회계정보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98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환경관리과는 토목환경과, 세무회계정보과는 통상경영계열 소속으로 본다.

부칙 <2000. 6. 7.>

이 학칙은 2000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1. 30.>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학과의 개편 등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종전의 사무자동화과, 토목환경과, 전기과, 통상경영계열에 소속된 재학생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1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자는 컴퓨터응용정보과, 토목환경시스템과, 컴퓨터응용전기과, 인터넷비즈니스정보과 소속으로 본다.

③ (다른 규정의 개정) 다른 규정 중 학과 명칭 변경은 남해전문대학 학칙을 준용한다.

부칙 <2001. 8. 1.>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9. 1.>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1. 7.>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11. 11.>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2. 18.>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7. 19.>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2. 25.>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1. 13.>

①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학과의 개편 등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의 컴퓨터응용정보과, 인터넷비즈니스정보과에 소속된 재적생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5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컴퓨터정보과, 중국e-비즈니스과 소속으로 본다.

부칙 <2006. 6. 20.>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5. 24.>

①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학과의 개편 등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종전의 조선토목계열, 전기과, 비즈니스사무과에 소속된 재학생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7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토목환경시스템과, 컴퓨터응용전기과, 중국 e-비즈니스과 소속으로 본다.

부칙 <2008. 7. 3.>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5. 14.>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3. 1.>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8. 25.>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9. 1.>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2. 7.>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12조(입학자격) 이 학칙의 시행 이전에 본 조의 입학자격에 따라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입학원서를 제출한 사람은 본 과정의 입학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부칙 <2011. 9. 28.>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2. 10.>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7. 11.>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기존 전임강사는 이 학칙에 따른 조교수로 보며, 전임강사 근무경력은 조교수 근무경력으로 본다.

부칙 <2012. 12. 12.>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3. 6.>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13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4. 10.>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13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2. 17.>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2. 23.>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14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8. 11.>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15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 12.>

이 학칙은 2016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8. 30.>

이 학칙은 2016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2. 6.>

이 학칙은 2016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4. 4.>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2. 20.>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18. 2. 13.>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18. 5. 4.>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연혁

- 제 정 제1호 (1996. 03. 01.)
- 일부개정 제2호 (1996. 09. 01.)
- 일부개정 제3호 (1996. 11. 01.)
- 일부개정 제4호 (1997. 03. 01.)
- 일부개정 제5호 (1998. 02. 20.)
- 일부개정 제6호 (1998. 03. 20.)
- 일부개정 제7호 (1999. 02. 24.)
- 일부개정 제8호 (2000. 06. 07.)
- 일부개정 제9호 (2000. 11. 30.)
- 일부개정 제2001-1호 (2001. 08. 01.)
- 일부개정 제2001-19호 (2001. 09. 01.)
- 일부개정 제2001-21호 (2001. 11. 07.)
- 일부개정 제2002-8호 (2002. 11. 11.)
- 일부개정 제2003-1호 (2003. 04. 12.)
- 일부개정 제2003-2호 (2003. 10. 20.)
- 일부개정 제2004-1호 (2004. 02. 18.)
- 일부개정 제2004-3호 (2004. 07. 19.)
- 일부개정 제2005-5호 (2005. 02. 25.)
- 일부개정 제2005-23호 (2005. 05. 02.)
- 일부개정 제2006-1호 (2006. 06. 20.)
- 일부개정 제2007-1호 (2007. 11. 13.)
- 일부개정 제2008-10호 (2008. 07. 03.)
- 일부개정 제2009-3호 (2009. 05. 14.)
- 일부개정 제2010-2호 (2010. 03. 01.)
- 일부개정 제2010-7호 (2010. 08. 25.)
- 일부개정 제2010-10호 (2010. 09. 01.)
- 일부개정 제2011-1호 (2011. 02. 07.)
- 일부개정 제2011-23호 (2011. 09. 20.)
- 일부개정 제2012-2호 (2012. 02. 10.)
- 일부개정 제2012-5호 (2012. 07. 11.)
- 일부개정 제2012-8호 (2012. 12. 12.)

- 일부개정 제2013-1호 (2013. 03. 06.)
- 일부개정 제2013-50호 (2013. 04. 10.)
- 전부개정 제2014-2호 (2014. 03. 01.)
- 일부개정 제2014-29호 (2014. 12. 23.)
- 일부개정 제2015-9호 (2015. 08. 11.)
- 일부개정 제2016-1호 (2016. 01. 12.)
- 일부개정 제2016-17호 (2016. 08. 30.)
- 일부개정 제2016-36호 (2016. 12. 06.)
- 일부개정 제2017-8호 (2017. 03. 31.)
- 일부개정 제2017-14호 (2017. 12. 20.)
- 일부개정 제2018-1호 (2018. 2. 13.)
- 일부개정 제2018-8호 (2018. 5. 4.)

[별표 1] <개정 2014.12.23, 2016.01.12.>

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학과	2018학년도	비 고
계(8개 학과)	400	
관 광 과	60	
호 텔 조 리 제 빵 과	60	
조 선 해 양 공 학 과	50	
메 카 트 로 닉 스 학 과	50	
전 기 과	50	
컴 퓨 터 S W 공 학 과	50	
금 융 회 계 사 무 과	50	
관 광 조 경 디 자 인 과	30	

[별표 2]

9단계 평점방법

등급	배점	평점
A ⁺	100 ~ 95	4.5
A ^o	94 ~ 90	4.0
B ⁺	89 ~ 85	3.5
B ^o	84 ~ 80	3.0
C ⁺	79 ~ 75	2.5
C ^o	74 ~ 70	2.0
D ⁺	69 ~ 65	1.5
D ^o	64 ~ 60	1.0
F	59이하	0
P		평점제외

[별표 3] <개정 2014.12.23.>

전문학사학위의 종별

종 별	해 당 학 과	비 고
공업전문학사	조선해양공학과, 메카트로닉스학과, 전기과, 컴퓨터SW공학과, 관광조경디자인과	
가정전문학사	호텔조리제빵과	
관광전문학사	관 광 과	
경영전문학사	금융회계사무과	

[별표 4]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학사학위의 종별

종 별	해 당 학 과	비 고
경영학사	비즈니스사무학과	

[별표 5]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설치학과 및 모집정원

과 정	설 치 학 과	모 집 정 원	
		주 간	야 간
학 사 학 위 전 공 심 화 과	비 즈 니 스 사 무 학 과		25명
	계 1개학과	25명	

[별지 제1호 서식]

제 호

학 위 증

○ ○ ○

○○년○월○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 ○○과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여 ○ ○ 전문학사의 자격을 얻었
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경남도립남해대학총장 ○ ○ ○

학위 번호 : 남해 - ○ ○ - ○ ○ ○ ○

[별지 제2호 서식]

제 호

수료증서

○ ○ ○
○○년○월○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 ○○과 ○학년 소정의 과정을 수료하였기에 ○ ○ 전문학사 수료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경남도립남해대학총장

[별지 제4호 서식]

제 호

학 위 증

○ ○ ○

○○년○월○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 ○○과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여 ○ ○ 학사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경남도립남해대학총장 ○ ○ ○

학위 번호 : 남해 - ○ ○ - ○○○○

[별지 제5호 서식]

제 호

수료증서

○ ○ ○
○○년○월○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 ○○과 ○학년 소정의 과정을 수료하였기에 ○○학사과정 수료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경남도립남해대학총장